

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

HR 시프트 /2016.1

1. 운영내용

A 상무, 2015 년 1 월 1 일부터 매 1 년 단위 임원신분으로 계약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년과 2017 년까지 하여 위임계약을 종료

2. 문의

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1 년일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매 1 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

3. 문의에 대한 답변

이 문제는 비등기 임원(계약기간이 1 년인 임원)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임원의 퇴직금 정산에 관한 제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느냐가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.

세법은 임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

⑥ 임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. (1998. 12. 31 개정)

1. 법인의 회장 · 사장 · 부사장 · 이사장 · 대표이사 · 전무이사 · 상무이사 등 이사회
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(1998. 12. 31 개정)

2. 합명회사 ·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(1998. 12. 31 개정)

3. 감사 (1998. 12. 31 개정)

4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(1998. 12. 31 개정)

[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 6 항]

이 규정에 의해 1 년단위 계약의 미등기 임원은 그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 43 조 제 6 항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면 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의하신 A 상무가 위 규정내용 4 호에 의해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 실질적 퇴직일이 아닌 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점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사항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.

미등기 임원이 아닌 등기임원이 회사의 임원등기 기간인 2 년 또한 3 년에 위임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(연임)되어 재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, 이전 위임 만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참고로 세법상 임원과 상법상 임원 그리고 노동법상 임원은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

상법상 임원은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며, 노동법상 임원은 실질관계를 중시하여 지시.보고관계 하에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법에서는 가능한 세금의 확보를 위해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